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7호 2019. 9. 23. (월)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05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2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024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 정선군 공고 제2019-1027호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05호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9-359호(2019.9.6.)로 결정(변경)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변경)취지

- 농촌 및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 나.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00		
도시지역계		42,548,998	-	42,548,998	3.49		
도시지역	주거지역	소 계	5,023,056	-	5,023,056	0.41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7,131	-	1,137,131	0.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	-	3,517,798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	-	80,711	0.01	
		준주거지역	287,416	-	287,416	0.02	
	상업지역	소 계	1,120,435	-	1,120,435	0.09	
		일반상업지역	1,103,580	-	1,103,580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공업지역	소 계	611,392	-	611,392	0.06	
		일반공업지역	306,285	-	306,285	0.03	
		준공업지역	305,107	-	305,107	0.03	
	녹지지역	소 계	35,794,115	-	35,794,115	2.93	
		보전녹지지역	3,800,625	-	3,800,625	0.31	
		생산녹지지역	903,537	-	903,537	0.07	
		자연녹지지역	31,089,953	-	31,089,953	2.55	
	관리지역	소 계	224,589,478	증) 512,962	225,102,440	18.46	
보전관리지역		94,581,563	증) 347,997	94,929,560	7.78		
생산관리지역		27,621,773	증) 112,607	27,734,380	2.27		
계획관리지역		102,386,142	증) 52,358	102,438,500	8.40		
농림지역		944,500,538	감) 512,962	943,987,576	77.39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6		

※기정: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정고시(정선군고시 제2018-86호, 2018.6.8.)  
 및 경일탄광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정선군고시 제2018-95호, 2018.6.22)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12,962			
정 선 읍				56,959			
1	정선읍 애산리 269-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985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이나, 현황(하천구 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정선읍 애산리 269-2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69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정선읍 애산리 266-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32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정선읍 신월리 310-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67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5	정선읍 용탄리 976-1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197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 경	
6	정선읍 용탄리 573-30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9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신 동 읍				333,819			
1	신동읍 덕천리 36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324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신동읍 고성리 44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18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 경	
3	신동읍 고성리 486-2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64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신동읍 예미리 855-2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415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5	신동읍 천포리 210-6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344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 경	
6	신동읍 조동리 산97-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6,70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 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7	신동읍 조동리 314-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66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 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8	신동읍 조동리 298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66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 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9	신동읍 덕천리 338-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859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 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sup>2</sup>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여 량 면				11,675			
1	여량면 봉정리 23-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21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여량면 봉정리 377-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64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북 평 면				55,406			
1	북평면 남평리 1019-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08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북평면 남평리 990-2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41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북평면 나전리 425-20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47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북평면 나전리 222-1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8,06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 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임 계 면				48,904			
1	임계면 봉산리 325-2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78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 (도로)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임계면 반천리 603-1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6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임계면 반천리 610-1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925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 경	
4	임계면 반천리 501-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2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화 암 면				6,199			
1	화암면 석곡리 979-6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199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다.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024호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를 반영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19년 하반기)에 따른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안 제1조 ~ 제3조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 : 안 제4조 ~ 제7조
- 다.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안 제8조 ~ 제9조
- 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 이용대상자 및 이용, 이동지원센터 관련 규정 : 안 제10조 ~ 제21조
- 마. 수탁자의 의무, 교육, 예산의 확보, 시행규칙 : 안 제22조 ~ 제25조
- 바. 등록 신청서 및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0. ~ 10. 14. (24일간)

##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64),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할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

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 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 3. 교통약자 서비스
-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의 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 각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주무관	담당	과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V표 또는 O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생활형태	보조인	있음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 〇〇〇-〇〇〇〇)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배차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 2019. 7. 5., 일부개정]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④ 삭제 <2012. 11. 30.>

정선군 공고 제2019-1027호

###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전담부서 지정 (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무직원 등(안 제4조~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기획실장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전화: 033)560-2217, 팩스: 033- 560-2592, 이메일: kja9905@korea.kr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감사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